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2656
----------	-------

제출연월일 : 2025.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안 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투자·상생협력”을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계산식 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 (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

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나.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
· 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상생협력”을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57조제1항 계산식 중 “투자·상생협력”을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른 회사 등이 납부한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계산 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투자·상생협력”을 각각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상생협력”을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투자·상생협력”을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5조의7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6조의9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

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로 한다.

제76조의1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연결모법인을”을 “연결법인을”로,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

을 “연결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한다.

가.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해당 연결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해당 연결법인 외의 기존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제76조의15제2항 중 “투자·상생협력”을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76조의18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상생협력”을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76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76조의21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90조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제3호·제4호 및”으로 한다.

제9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소득”을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9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8제3항 전단 중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98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8조의6제4항 본문”

을 “제98조의6제5항 본문”으로 한다.

제1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로 한다.

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4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익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게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결법인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납세의무자) ①·② (생략)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u>투자·상생협력</u>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생략)	제3조(납세의무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투자·배당 및 상생협력</u> ----- ----- -----.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2. (생략) <u><신 설></u> 3. (생략) ③ (생략)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생략)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③ (생략)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② (생략)

② -----

-----.

1. -----

----- 법인

2. -----

----- 법인-----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

③ -----

-----.

1. (현행과 같음)

2. -----

30퍼센트-----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8. (생략)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

-----.

1. ~ 8. (현행과 같음)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② -----

-----.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

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③ ~ ⑥ (생략)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나.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세율) ① -----

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② (생략)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

-----.

1.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 -----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② ~ ⑧ (생략)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

①-----

-----.

$$\text{-----} = \text{--} \times \frac{\text{--}}{\text{--}}$$

---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

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른 회사등이 납부한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
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
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
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
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
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
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
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
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
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
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
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
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
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
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
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
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
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
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음 계
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
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
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

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

----- 투자
· 배당 및 상생협력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투자
· 배당 및 상생협력 -----

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text{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times \frac{6}{E}$$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

-----.

-----.

1. -----

$$\text{-----} = \text{-----} \times \frac{\text{-----}}{\text{-----}}$$

-----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2. (생략)

② ~ ⑤ (생략)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

1. -----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② (생략)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 ----- -----.
1.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u>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u>2027년 12월 31일</u>)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1. <u>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u>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
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
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
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생략)

④ ~ ⑦ (생략)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생략)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
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
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
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
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
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 <u>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u>	1. <u>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u> <u>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2. <u>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u>	2. <u>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u> <u>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 ⑥ (생략)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생략)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
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
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
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
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
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
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
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
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
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
입.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
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
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
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
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
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
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
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
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
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
금에 산입

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
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
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
인의 손금에 산입. 다만, 제76
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
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
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
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
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
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
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
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
금에 산입. 다만, 제76조의19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
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
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생 략) 2. <u>연결모법인</u>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u>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u>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u>연결모법인</u>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u>연결모법인</u>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u>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u> 중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u>연결법인</u> ----- ----- ----- ----- ----- ----- --- <u>연결법인</u> ----- ----- ----- ----- 3. <u>연결법인</u>----- ----- ----- ----- ----- -- <u>연결법인</u>----- ----- <u>연결법인</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연결법인이 -----

-----연결법인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준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준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준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나.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연결법인-----

가. 기준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준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해당 연결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해당 연결법인 외의 기준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나. -----

연결법인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현
행과 같음)

②

투자 · 배당 및 상생
협력

$$\text{연결중간 예납세액} = (A - B - C) \times \frac{6}{D}$$

A: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D: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 × -----

----- 투자·배

당 및 상생협력 -----

2. (생략)

② ~ ⑤ (생략)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생략)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74조의2, 제75조 -----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 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 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 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 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 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 ----- 제 74조의2, 제75조 ----- ----- ----- -----.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 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 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 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의 적용 제외) -----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 ----- ----- -----.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u>	2. <u>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u>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삭 제

나. ~ 마. (생략)

3. ~ 9. (생략)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나. ~ 마. (현행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10.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

라. ~ 카. (생략)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략) <u><신설></u>	라. ~ 카. (현행과 같음)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 음) <u>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 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u>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 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 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 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 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 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u>
--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② (생략) 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	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 -----. ⑦ ----- 제6항----- ----- ----- ----- ----- ----- -----.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제
---	---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

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⑥ ~ ⑧ (생략)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생략) <신설>	----- -----. 1. · 2.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u>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 3. (생략) 4. 제75조의7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제1조(시행일)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 -----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74,424억원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출	○		해	당	없	음		
	○							
	소 계(A)							
수입	법인세율 환원	+3,336	+42,772	+42,772	+42,772	+42,772	+174,424	+34,885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추	정	곤	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추	정	곤	란		
	연결납세 취소시 사후관리 합리화		추	정	곤	란		
	연결납세 배제시 사후관리 합리화		추	정	곤	란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추	정	곤	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범위 합리화		추	정	곤	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추	정	곤	란		
	소 계(B)	+3,336	+42,772	+42,772	+42,772	+42,772	+174,424	+34,885
총 비용(A-B)		△ 3,336	△ 42,772	△ 42,772	△ 42,772	△ 42,772	△ 174,424	△ 34,885

<작성방법>

- 위 표에 따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을 재정수반요인별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단위: 백만원 또는 억원 중 선택하여 기재)
- 추계기간: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정수반요인별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각각 기재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55조(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법인세율 1%p씩 인상
2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
3	제51조의2(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4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제외함
5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거나 해산하여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제외함
6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이 납부하는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함

7	제93조(외국 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과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에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를 포함
8	제124조(명령 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함

<작성방법>

-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 각 조·항 등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조·항 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별도 항목별로 분류)
-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면 추계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열거
- ※ 재정수반요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55조(세율)	여	
2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에 따른 추가 손금 산입의 규모 추정하기 곤란
3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소득공제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4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 납세방식이 취소되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제외되는 규모 추정하기 곤란

5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 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거나 해산하여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제외 규모 추정하기 곤란
6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	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연결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모 추정하기 곤란
7	제93조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장외 파생상품 소득 및 국내 자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 해당 국내 자산의 시가와 이전 대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어 세수효과 추정 곤란
8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건수 등 관련 정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과 추정 곤란

<작성방법>

- 각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실시여부 및 추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등 기재
- 추계 미실시 사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기존 실시 중인 사업의 명문화(기존사업명을 함께 기재)' 등 추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5.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

<작성방법>

- 비용추계 전반에 대한 전제사항 등을 기재
 -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의안의 시행시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① 법인세율 환원

-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에 세율 변경 전·후를 가정하여 추정

<작성방법>

- 의안의 심의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II. 재정수반요인」에 기재된 각 재정수반요인별로 상세한 추계내역을 기재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재정수반요인별로 추계에 활용된 통계자료와 그 출처, 추계의 근거, 추계의 전제·가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면 별도로 추계 가능
-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추계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범위로 기재 가능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작성방법>

- 비용추계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포함) 등을 기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남지형	서은혜	조용래	박금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지형	044-215-4226	njh90@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 기타						
〈합 계〉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중앙정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자치단체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기타						
○						
〈 합 계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 |
|--|
| ○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
|--|

Ⅳ. 부대의견

- | |
|--------|
| ○ 해당없음 |
|--------|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Ⅵ.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남지형	서은혜	조용래	박금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지형	044-215-4226	njh90@korea.kr